

## 인도네시아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형사사범공조조약

인도네시아공화국과 대한민국(이하 “당사국”이라 한다)은,

형사사건에서의 협조 및 공조를 통하여 양국이 범죄의 예방·수사·기소 및  
진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를 희망하여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### 제 1 조

#### 적용범위

1.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상호공조를 제공한다.
2. 이 조약의 목적상, “형사사건”이라 함은 공조요청시에 그 처벌이 요청국의  
권한있는 당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·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  
한다.
3. 형사사건은 조세·관세·외국환관리 또는 그 밖의 재정문제에 관한 법에  
위배되는 범죄에 관련된 사건을 포함하나, 이에 관한 비형사 재판절차는 그러하  
지 아니하다.
4. 공조는 다음을 포함한다.
  - 가.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·진술의 취득
  - 나. 정보·서류·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
  - 다.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
  - 라. 서류의 송달